

기본소득 쟁점: 사회보장과 젠더

김진석(서울여대)
@20201218 민주노총

기본소득과 사회보장

‘전통적’ 복지국가 사회보장제도

■ 사회보장제도

- “출산, 양육, 실업, 노령, 장애, 질병,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, 공공부조, 사회서비스를 말한다”
(사회보장기본법 제3조)

■ 사회보장제도의 구성

- 사회보험
- 공공부조
- 사회서비스

사회보장과 기본소득 비교

■ 기본소득에 의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축론

- “기본소득은 사회보장의 대체제~~d~~든 보완재든, 어떤 방식으로든 적절하지 않다”
- 첫째, 자원의 총량과 현실적 예산 제약 상황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은 기존 제도의 기반을 약화할 것
- 둘째,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배타적 현금 급여로 대체하는 방식으로의 전환
- 셋째,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시장화를 가속화시킬 것

사회보장과 기본소득 비교

■ 사회보장과 기본소득 양립론

-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국가를 대체하기보다 기존 복지국가의 기능을 보완
- 내부에 상당한 이질성 존재

■ 독자적 기본소득론

- 기본소득은 공유부에 대한 시민적 권리를 기반으로 한 분배수단으로서 특정한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욕구에 기반한 분배원리인 사회보장제도와 근본적으로 차이
-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국가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이나 양립가능성 주요한 논점 아님

다양한 기본소득안: 완전기본소득

- 고용 등 자격조건과 무관하게 운영되는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필요
 - 완전고용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복지국가 사회보장 제도는 전반적인 고용감소와 노동의 중층화 등으로 인해 신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현실 진단에 바탕을 둠
 - 개인에게 중위소득 30% 수준(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준)의 기본소득 지급
- 현재의 복지정책을 모두 대체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
 - 현금성 공공부조는 기본소득으로 대체
 - 국민연금,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은 일정한 수정과 보완
 - 사회서비스 영역은 기본소득 도입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확충

다양한 기본소득안: 부분기본소득

■ 사회수당형 기본소득

- 사회수당: 특정 인구사회적 특징에 따라 특정한 집단에 속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정액의 현금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
 - 예: 아동수당, 청년수당, 노인수당, 가족수당, 장애인 수당 등
- 사실상 모든 주민에게 적용되는 인구사회적 기준에 따라 급여기준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보편성 충족
 - 무조건성의 원칙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한계가 있음
 - "보편성의 원칙을 특정 생애주기 수준으로 제한한 기본소득" (백승호, 2017)
- 보편성의 원칙에도 한계가 있음(예: 장애수당)
- 보충적 성격을 가지는 급여로 급여수준이 충분치 않음

다양한 기본소득안: 부분기본소득

■ 사회부조형 기본소득

- *사실상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공공부조 제도에 해당*
 - 일부 저개발 국가와 같이 빈곤율이 높은 지역에서 빈곤구제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
 - 나미비아, 인도 등의 사례
- *시행주체가 국가나 공공이 아니고 민간단체인 특징*

■ 이용권형 기본소득

- *한시적이지만 보편적인 기본소득이용권(바우처)을 모든 주민에게 발급*
- *현실적인 자원 제약의 조건 내에서 보편성과 무조건성을 구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*

기본소득 이행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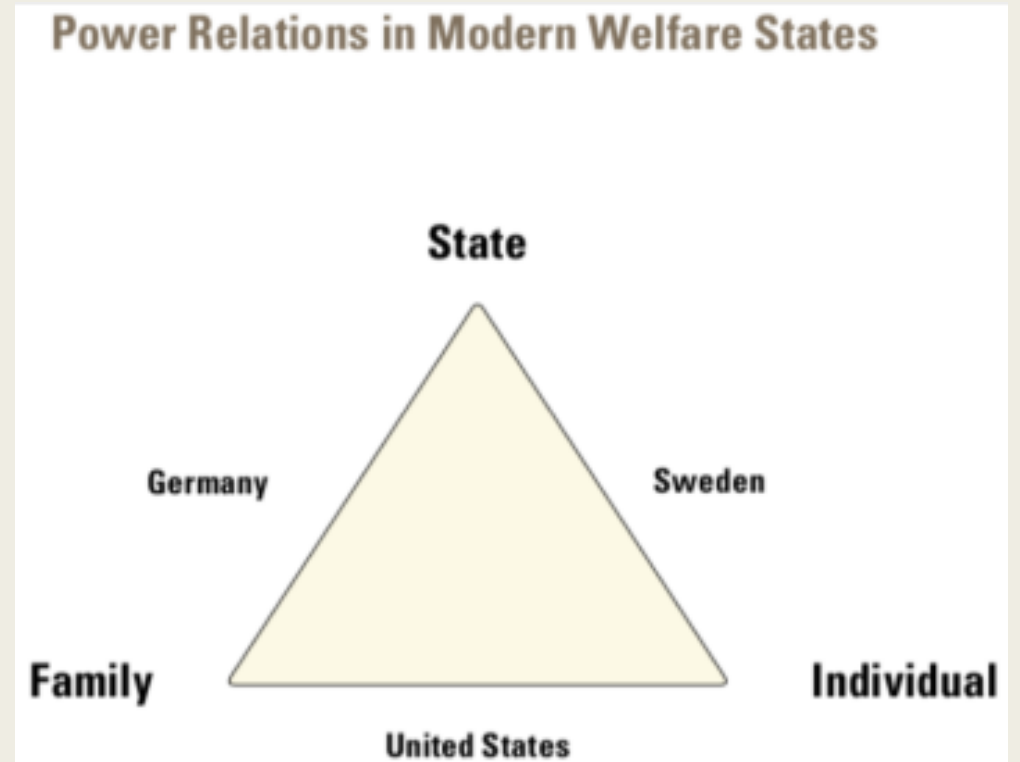
- “기본소득이라는 권리 실현의 수단은 돈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제도화하고 이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”
 - 생계급여이나 기초연금의 인상, 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생활안정성 하락에 대한 대응 등의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주장
- 완전고용 가정의 현실 부정합성, 플랫폼, 깃 노동 등 고용내부의 불안정성과 중층화 등 복지국가 사회보장 제도의 전제가 무너져가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이 가지는 무조건성, 보편성, 개별성 등의 요소는 정책적 대응방안의 하나로 주목할 만함

기본소득 이행방안

- 첫째, 기본소득이 가지는 무조건성과 보편성의 측면은 커버리지가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고용기반 사회보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
 - 국민연금 재분배 기능 조정 가능
 - 고용보험 하한선의 문제나 한시성의 문제에 대한 대안
 - 공공부조의 낙인효과, 행정비용 감소

기본소득 이행방안

- 둘째, 개인기반 복지국가의 구현에 중요한 함의
 - 가족-국가동맹 복지국가에서 개인-국가동맹 복지국가로의 이행에 함의
 - 개인의 자율성 강화



소결

- '모두를 위한 진정한 자유'라는 기본소득의 정책적 목표는 사회보장제도가 기반하고 있는 사회권의 실현과 밀접하게 연결
- 무조건성과 보편성 등 기본소득의 원칙은 현 상황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부정합성과 불충분성을 보완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가짐
- 기존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고려없이 기본소득을 독자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검토와 논의 필요

기본소득과 젠더

기본소득과 젠더

- 기본소득에 대한 여성주의자의 입장은 동질적이지 않음
- 기본소득이 젠더 정의의 실현을 촉진할 것임 (Pateman, 2004)
-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감소시키는 반여성적 정책이 될 위험 경고 (Christensen, 2008)

젠더와 기본소득: 순기능과 역기능

■ 순기능

- 첫째, 가사 및 돌봄 노동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모든 무급노동에 대한 보상과 사회적 인정
 - 임금노동 중심, 남성생계부양자 중심으로 배타적으로 편재된 자본주의 보상체계에 대한 문제제기
 - 여성주의적 정의로운 사회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필연적으로 요구함
- 둘째,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여성 개인의 자율성^{autonomy} 향상에 기여
 - 개별성의 원칙을 갖는 기본소득은 여성의 협상력 전반적으로 강화할 것
 - 남성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에 도움

■ 역기능

- 여성 무급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이 오히려 성역할구분과 성차별적 노동분업 구조 강화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어

젠더 정의 구현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의 조건

- 돌봄의 탈상품화와 탈가족화 선행
- 성평등적인 돌봄책임 완수를 위한 임금노동시간의 단축
- 임노동을 전제한 노동연계복지와 연금제도의 개편
- 충분한 소득과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 보장